

대학행정실무위원회 규정

제정 2015. 1. 27.

제3차 개정 2025. 7.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 행정 부서의 정보 교류, 정책 방향, 각종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행정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1. 행정 업무 처리 관련 정보 교류
2. 정책 방향 설정 관련 논의
3. 부서 제도 개선
4.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업무 협조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교무연구팀장, 학사지원팀장, 기획예산팀장**, 평가팀장, 학생지원팀장, 대외협력팀장, 행정지원팀장, 회계팀장, 시설팀장, 입학팀장, 홍보팀장, 대학원지원팀장, 전산정보팀장, 학술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팀장, **교육기획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과 총장이 추천한 약간명의 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19.06.25., 2022.04.20., 2025.7.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전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논의가 필요 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하며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06.25, 2022.04.20)

제6조(자료제출의무) ① 본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필요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257, 2022.04.20.)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1468, 2025.07.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지침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 내규 등은 제규정기본규정 제7조1항에 따라 각 업무소관부서장이 개정한다.